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889
----------	-----

제출년월일 : 2004. 11. 28

제출자 : 고성군수

1. 제정이유

주차장법령에 의한 교통관련 과태료 및 각종 징수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으로서 주차장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 나. 회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회계 관계공무원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세입금의 부과징수(안 제6조)
- 마.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금고의 설치(안 제7조)
- 바. 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보조금의 반환(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부설주차장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납부금)
 - 주차장법 제24조의2(과징금처분)
 - 주차장법 제30조(과태료), 주차장법 제32조(이행강제금)
 -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주·정차 위반 과태료)
- 입법예고
 - 결과 의견내용 없음

4. 본 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주차장법시행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8.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지출한다.

1.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
3. 공영주차장설치를 위한 재원
4.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 포상금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출납명령관은 지역경제과장, 출납공무원은 교통행정담당(6급)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책임) 자방재정법중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중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이 회계 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사항은 이 회계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세입징수) ①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수입금, 납부금,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고성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8조(보조금) ①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고성군주차장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자기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②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은 상업지역 및 주거 지역으로 한정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공사금액의 80% 이내로 한가구당 최고 200만원 이하로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2.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을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다만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의 경우는 제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자가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원부		납입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제호	년도	제호	년도	제호	년도	제호	년도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주소		주소		주소		주소	
건명		건명		건명		건명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고성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 출납명령관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고성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 노 월 일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 출납명령관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고성군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 노 월 일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 출납명령관		위 금액을 영수함 200 노 월 일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 출납명령관	